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용자 제도는 사업주당 1억 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으나, 2023년 이후 일부 사업장의 대규모 체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낮은 한도로 인해 실질적인 청산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임금 상승, 체불 장기화 등 영향으로 1인당 체불액 또한 1인당 용자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체불액을 전액 보전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25.9.2)하여 대규모 체불 사업장의 효과적인 청산 지원을 위해 현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하고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는 2,000만원으로 확대하며, 1회 체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10억원까지 용자 한도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서식을 제·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0.0~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9부터 제8조의12까지를 각각 제8조의10부터 제8조의13까지로 하고, 제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9(융자한도확대 적격 여부의 확인) ① 융자대상사업주가 1회에 2억원을 초과하는 체불액에 대해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8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 확인 신청 시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융자한도 확대 적격 확인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융자한도확대 사업주 상환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 융자한도확대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융자한도확대심의위원회를 통해 한도확대 필요성, 상환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융자한도확대 적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제8조의8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에 해당 내용을 표기하여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업주융자한도확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제8조의10(중전의 제8조의9)제1항 중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융자대상

사업주”를 “용자대상사업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억5천만원”을 “2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자대상사업주가 제8조의8제2항에 따라 용자한도확대 적격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총 10억원(제2항에 따른 용자신청으로 용자를 이미 실행한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용자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체불 임금등 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용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2,0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자대상사업주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9 및 제8조의10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8조의9제1항에 따라 용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9(융자한도확대 적격 여부</u> <u>의 확인) ① 융자대상사업주가</u> <u>1회에 2억원을 초과하는 체불액</u> <u>에 대해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u> <u>에는 제8조의8 제1항에 따른 융</u> <u>자대상 확인 신청 시 별지 제6</u> <u>호의7서식의 융자한도확대 적</u> <u>격 확인 신청서 및 별지 제6호</u> <u>의8서식의 융자한도확대 사업</u> <u>주 상환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u> <u>융자한도확대 적격 여부를 확인</u> <u>받아야 한다.</u> <u>②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u> <u>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u> <u>사업주융자한도확대심의위원회</u> <u>를 통해 한도확대 필요성, 상환</u> <u>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융자한도</u> <u>확대 적격 여부를 심의하도록</u> <u>하고,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제</u> <u>8조의8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u> <u>사업주 확인통지서에 해당 내용</u> <u>을 표기하여 사업주에게 통지해</u> <u>야 한다.</u> <u>③ 제2항의 사업주융자한도확</u>

제8조의9(채불 임금등 용자의 신청) ① 용자대상사업주는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른 용자대상사업주 용자신청서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용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불 임금등 용자 금지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용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1,500만원으로 한다.

<신 설>

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제8조의10(채불 임금등 용자의 신청) ① -----

----- 용자대상사업주 -----

-----.

② -----
----- 2억원-----

---. <후단 삭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자대상사업주가 제8조의8제2항에 따라 용자한도확대 적격을 확인 받은 경우에는 총 10억원(제2항에 따른 용자 신청으로 용자를 이미 실행한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용자를 신

<u><신 설></u> <u>제8조의10 ~ 제8조의12</u> (생략)	<u>청할 수 있다.</u> <u>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체불 임금등 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용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2,000만원으로 한다.</u> <u>제8조의11 ~ 제8조의13</u> (현행 제 8조의10부터 제8조의12까지와 같음)
--	---

용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발급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종(주산품)		
	상시근로자수	명	사업 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확인 신청 사항	1. 신청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는 사실
	2. 체불 임금등 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의 입사일 및 퇴직일(확인신청일 전 1년 이내 퇴직 여부)
	3.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등 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체불 임금등 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 및 체불금액: 다수일 경우 별지 작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재직 기간	체불금액(천원)						
					계	임금		퇴직급여등		기타	
						금액	기간	금액	기간	금액	기간
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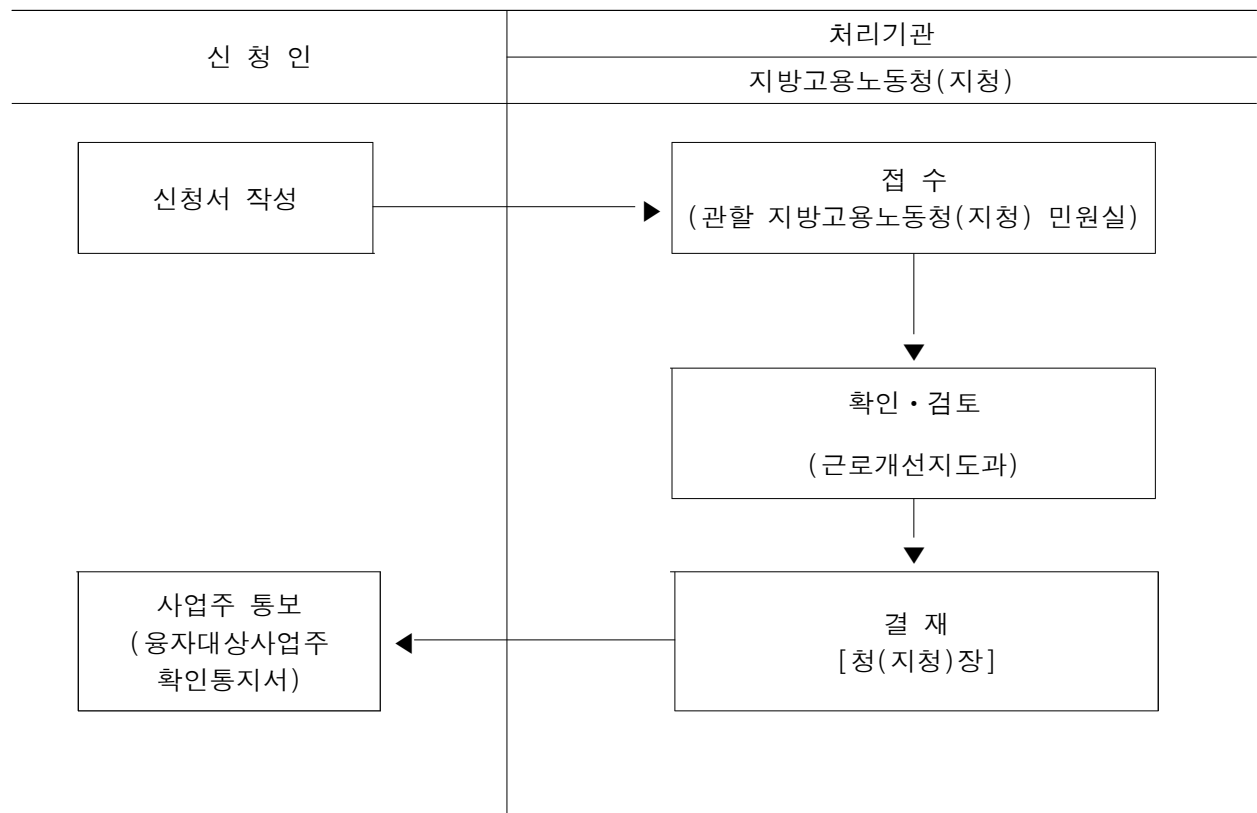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확인 대상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확인 대상 근로자의 체불 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첨부 서류 준비 안내

1. 사업주가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의 사업주가 된 날(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기초로 작성합니다.
2.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근로계약서, 4대 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서류 등을 말합니다.
3. 근로자의 체불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임금대장, 퇴직금 산정내역 등을 말합니다.

용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발급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사업주)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종(주산품)	사업 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확인 신청 사항	1. 신청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는 사실 2. 체불 임금등 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의 입사일 및 퇴직일(확인신청일 전 1년 이내 퇴직 여부) 3.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등 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4. (용자한도확대 희망 시) 용자한도확대 적격 여부(별지 제6호의7서식 「용자한도확대 적격 확인 신청서」, 별지 제6호의8서식 「용자한도확대 사업주 상황계획서」 별도 제출 필요)
----------	---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및 체불금액: 다수일 경우 별지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재직기간	체불금액(천원)						
					계	임금		퇴직급여등		기타	
						금액	기간	금액	기간	금액	기간
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u>17</u>	— <u>18</u>	— <u>19</u>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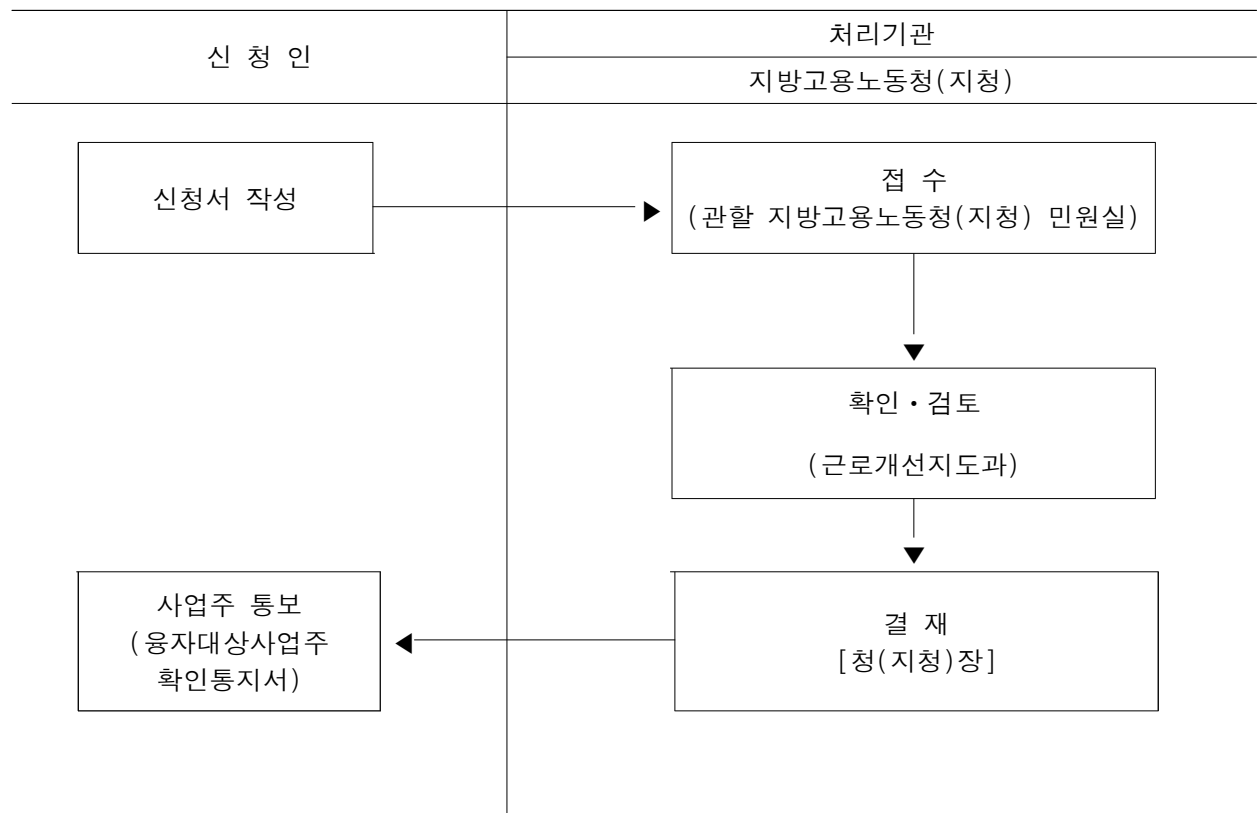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확인 대상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확인 대상 근로자의 체불 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응자한도확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 「응자한도확대 적격 확인 신청서」, 별지 제6호의8서식 「응자한도확대 사업주 상환계획서」	수수료 없음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첨부 서류 준비 안내

1. 사업주가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의 사업주가 된 날(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기초로 작성합니다.
2.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근로계약서, 4대 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서류 등을 말합니다.
3. 근로자의 체불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임금대장, 퇴직금 산정내역 등을 말합니다.

안내사항

1. “체불인원”은 용자신청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 따라 사업주가 확인을 요청한 근로자의 수이며, “체불금품 총액”은 이들의 체불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체불 임금등 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규칙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같은 규칙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안내사항

1. “체불인원”은 용자신청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 따라 사업주가 확인을 요청한 근로자의 수이며, “체불금품 총액”은 이들의 체불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체불 임금등 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규칙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같은 규칙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용자대상사업주 용자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발급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	-----	-----	----------

1. 신청인 (사업주)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종(주산품)
	사업 개시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구분	기재사항
2. 용자 신청 인원 및 금액	()명, ()천원
3.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였는지 여부	해당[] / 비해당[]
4.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포함 여부	포함[] / 미포함[]
5. 퇴직일이 확인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 초과자 포함 여부	포함[] / 미포함[]

6. 용자금 지급대상 근로자 및 용자신청금액(단위: 천원): 다수일 경우 별지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체불금액	용자신청액	계좌번호
계	명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에 대한 용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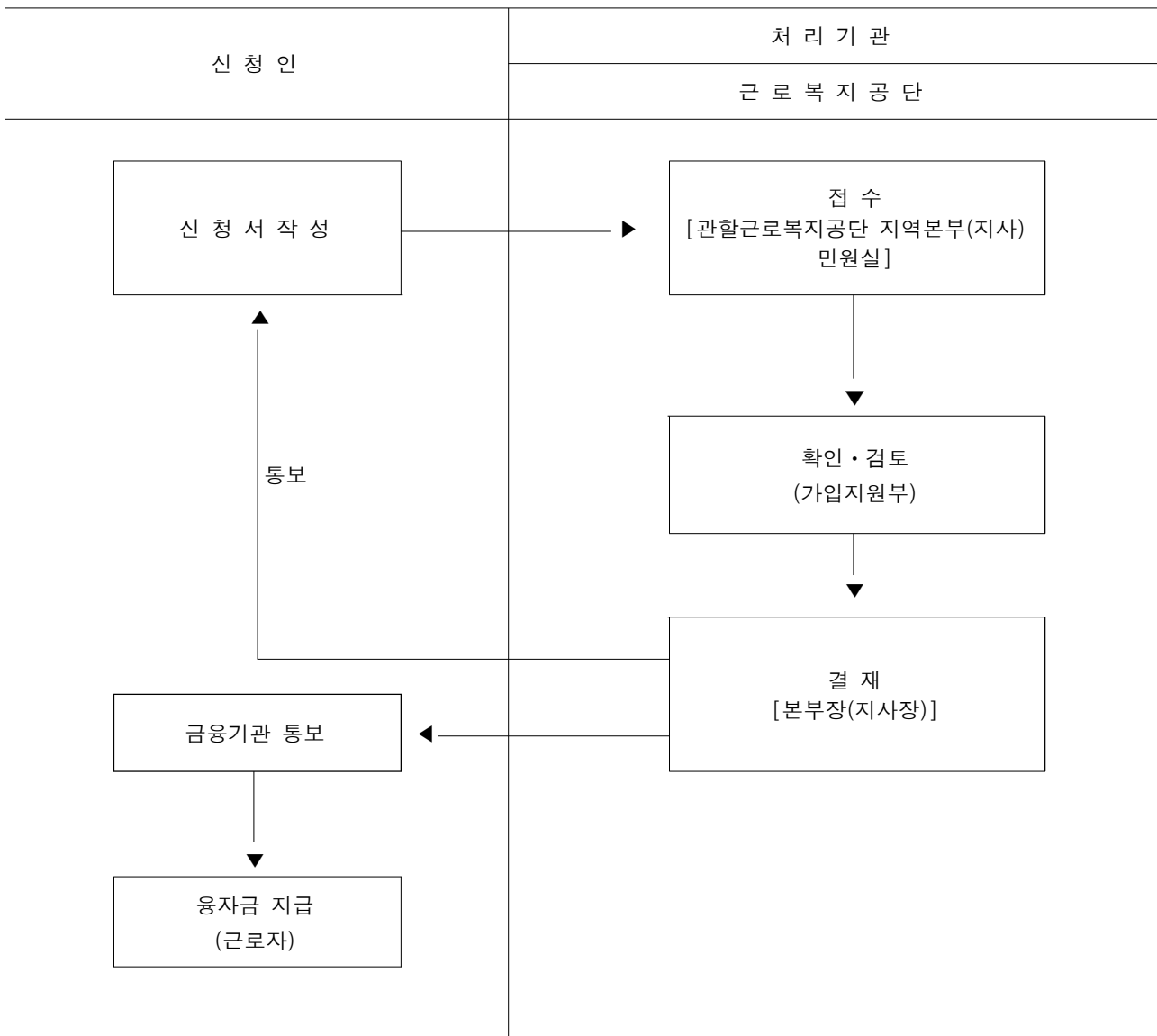
첨부서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용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사업개시일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가 된 날(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기초로 작성합니다.
2.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3.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사항에 기초하여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
4. 용자 신청일이 사업 개시일부터 6개월 이상이 되는지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용자대상이 아닙니다).
5. 6개월 미만 근로자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6개월 미만 근로자는 용자대상이 아닙니다).
6. 확인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을 초과한 퇴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확인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을 초과한 퇴직자는 용자대상이 아닙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용자대상사업주 용자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발급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1. 신청인 (사업주)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종(주산품)	
	사업 개시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구분	기재사항
2. 용자 신청 인원 및 금액	()명, ()천원
3.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였는지 여부	해당[] / 비해당[]
4.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포함 여부	포함[] / 미포함[]
5. 퇴직일이 확인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 초과자 포함 여부	포함[] / 미포함[]
6. 용자방식	신용·연대보증[] / 담보[]
7. 용자기간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8. 용자금 지급대상 근로자 및 용자신청금액(단위: 천원): 다수일 경우 별지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채불금액	용자신청액	계좌번호
계	명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라 임금등 채불 사업주에 대한 용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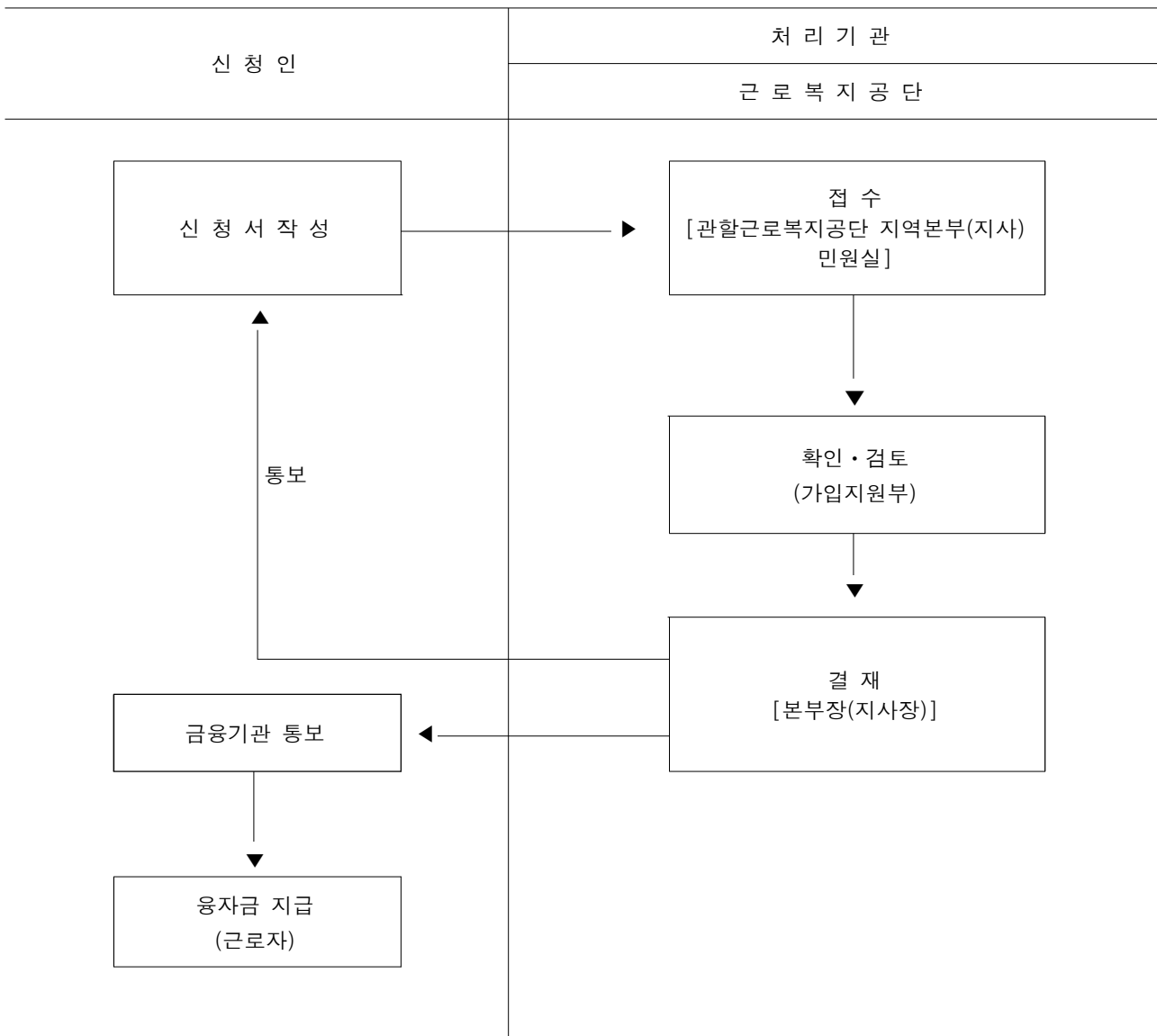
첨부서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3항에 따른 용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사업개시일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가 된 날(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기초로 작성합니다.
2.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3.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사항에 기초하여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
4. 용자 신청일이 사업 개시일부터 6개월 이상이 되는지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용자대상이 아닙니다).
5. 6개월 미만 근로자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6개월 미만 근로자는 용자대상이 아닙니다).
6. 확인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을 초과한 퇴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확인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을 초과한 퇴직자는 용자대상이 아닙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용자한도확대 적격 확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사업주)	사업장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체불현황	체불인원	명	체불금품 총액	원
한도 확대 신청 사항	용자한도확대 신청인원	명	용자한도확대 신청액	원
	기존 사업주용자 유형 신용·연대보증 [] 담보 []		기존 용자 지원금액	원
			기존 용자액 중 상환 금액	원

※ 칸이 부족한 경우 주요 내용만 기재하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 작성

한도 확대 요건 충족 여부	담보제공 예정 부동산 정보	담보제공 예정 부동산 가액	선순위 채권 등 현황	담보제공예정 부동산 가액에서 선순위 채권 등 현황 제외한 담보 설정 최종 가능액 (용자금의 120% 이상)

용자한도 확대 통한 체불 임금등 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 및 체불금액: 다수일 경우 별지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직일	재직기간	체불금액	용 희 망 금 액
계	명				원	원

용자한도 확대 신청사유	예) 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일시적 경영 어려움 증가, 근로자 0000명에 대한 체불 장기화 우려가 있어 긴급 자금 융통 필요
취약 노동자 우선지원 계획	예) 저소득 근로자(월평균임금 00만원 미만) 00명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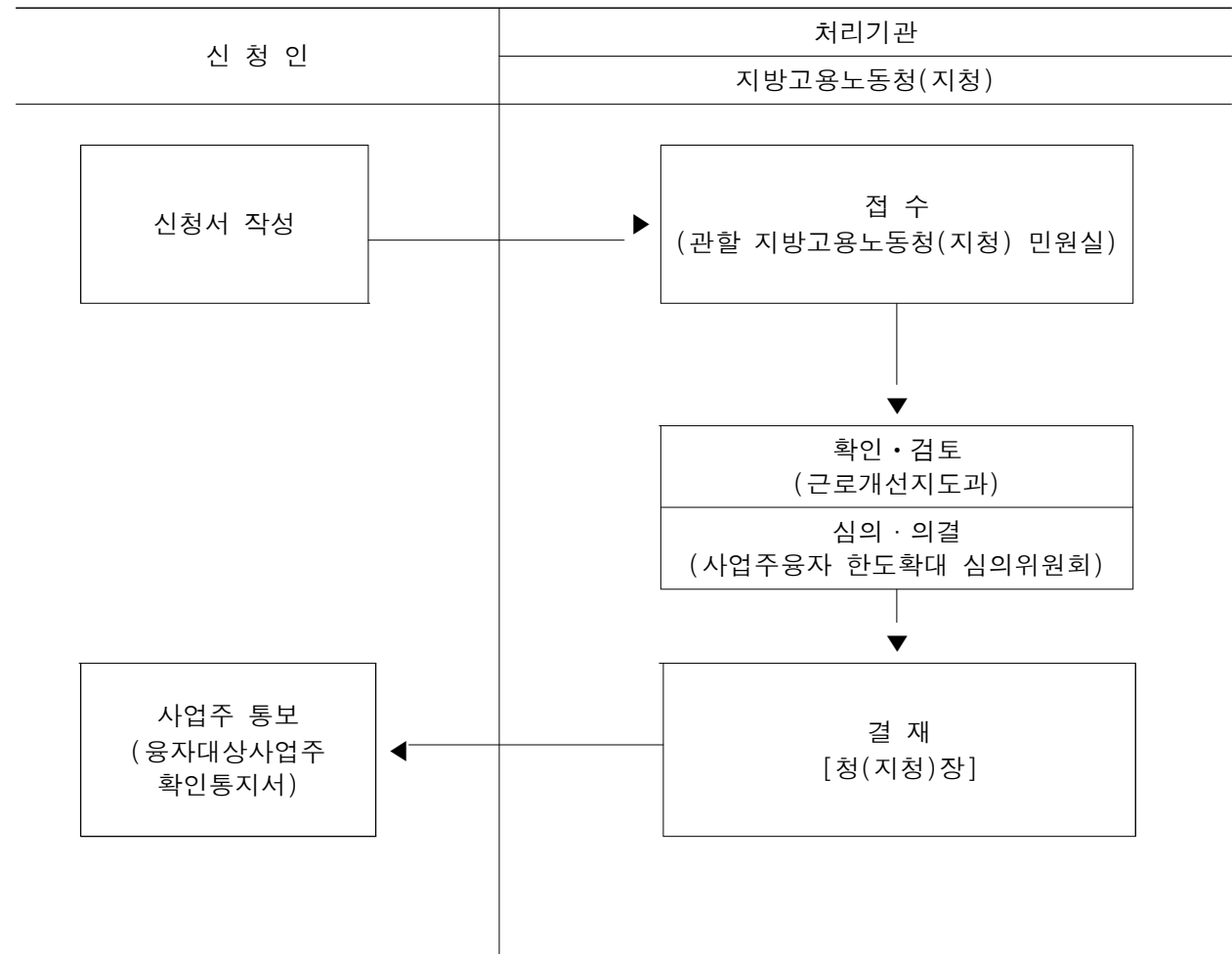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용자한도확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용자한도확대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용자한도확대 지원 대상 근로자의 체불 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담보제공을 통한 한도 확대 신청 시 담보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보제공 예정 자산 가액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 방법 및 첨부 서류 준비 안내

1. 체불현황은 용자한도확대 적격 확인 신청서 제출 시점에 사업주가 파악한 체불인원 및 체불금품 총액을 기재합니다.
2. 기존 용자 지원금액, 기존 용자액 중 상환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칸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담보제공을 통한 용자한도확대 신청 시 담보제공은 부동산으로 한정하며, '부동산 전액담보'인 경우에만 용자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산 정보에는 담보제공 예정인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주소를 기재하고, 선순위채권 등 현황에는 해당 담보물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 선순위채권 현황을 기재합니다.
4. 담보제공 부동산 가액은 자산에 대한 정확한 시세 및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해당 가액 기재 및 증빙서류를 별첨하되, 시세 또는 평가금액이 없어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가액의 추정치를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평가 결과 추정치가 실제 가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최종 용자 금액이 변동되거나 용자 실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담보제공 부동산의 정보,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재무제표(세무서 확인분) 등이 있으며, 기재하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입증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6. 담보제공을 통한 한도확대 신청 시 용자금액의 120% 이상까지 기재하고, 기준치 이상에 대한 작성은 선택사항입니다.
7.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4대 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서류 등을 말합니다.
8. 근로자의 체불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임금대장, 퇴직금 산정내역 등을 말합니다.
9. 한도 확대 시 신청인의 국세·지방세 체납(납부유예 포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용자 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용자한도확대 사업주 상환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주)	사업장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자산 현황	구분	종류	저당권 또는 (가)압류 현황		평가액
	부동산				원
	동산				원
	무형자산				원
	채권				
부채 현황 (선순위채권)	부채의 종류	차입일자	지급기일	금액	
				원	
				원	
				원	
용자금 상환계획	상환 예정일	상환 자원	상환 금액		
			원		
			원		
용자금 상환 계획에 대한 구체적 서술	예) 26.00월경 매출 대금 입금 예정으로 000원 제출 예) 3년 거치를 통해 28.00월까지 매월 0000원씩 상환, 29.1.월까지 미상환시 담보 부동산 매각을 통해 0000원 상환 예정				
	※ 칸이 부족한 경우 주요 내용만 기재하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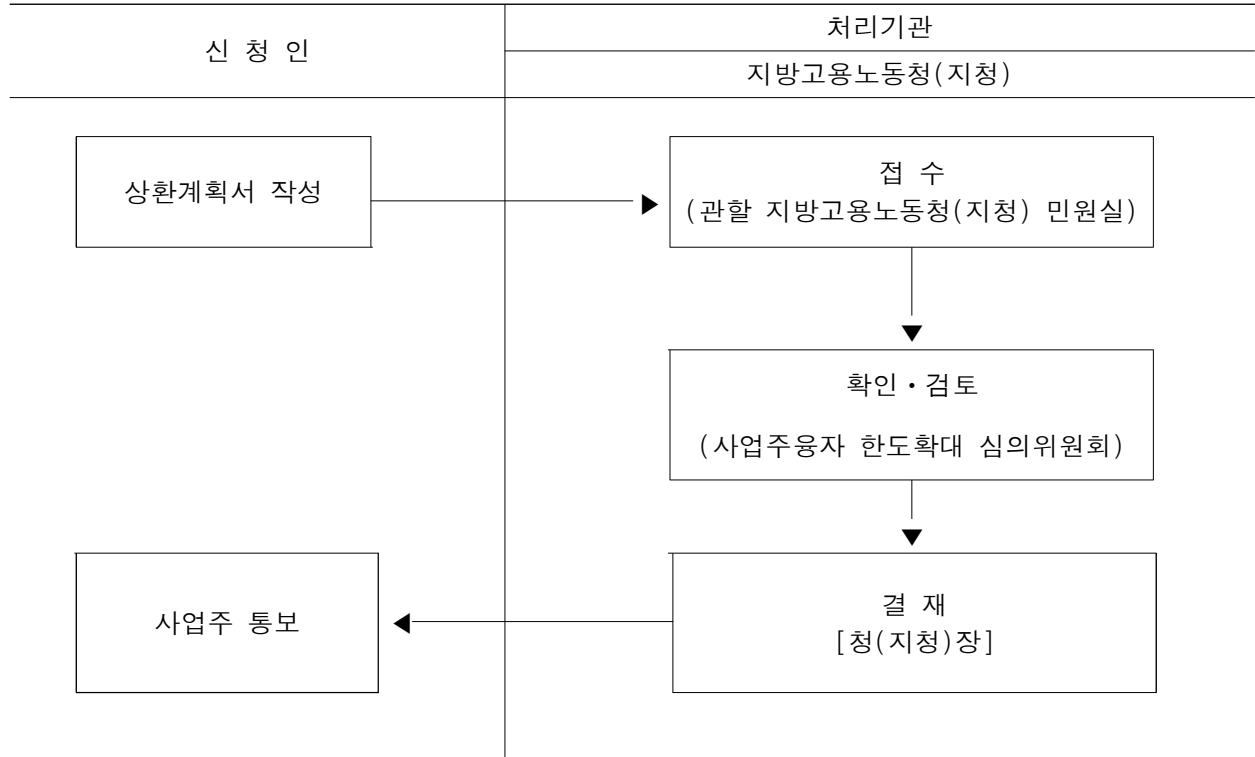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용자대상사업주 용자 한도확대를 위한 상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산의 종류와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부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 방법 및 첨부 서류 준비 안내

- 상환계획서 상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은 용자 상환여력을 증빙하거나 상환계획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사항으로, 담보 제공 예정 부동산 외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은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닙니다.
- 부동산 현황의 종류에는 토지, 건물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증빙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임대인(건물주)확인서 등으로 가능하고 기재하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입증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동산 현황의 종류에는 기계 등의 설비, 차량, 재고품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증빙은 재무상태표,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으로 가능하고 기재하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입증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무형자산 현황의 종류에는 사업주가 소유한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이 포함되며, 해당 권리에 대한 증빙은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저작권 등록증 사본 등 자산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입증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채권 현황의 종류에는 외상매출금, 미수금, 판매대금, 예금, 유가증권, 약속어음,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증빙은 세금계산서, 통장 잔액증명서, 주식 잔고증명서, 보유증권명세서 등 자산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입증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부채 현황에는 체불임금을 제외한 현황을 작성하며, 채무종류별 채무현황표를 작성하되 구체적인 증빙은 금융거래확인서, 채무확인서, 부채증명원 등 부채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입증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납세관련 부채 사실이 없는 것은 국세완납증명서(법인 및 대표자 각각 발급), 지방세완납증명서(법인 및 대표자 각각 발급), 납세사실증명(3개년) 등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 용자금 상환계획에 대한 구체적 서술로는 상환 방식, 상환기간 중 입금예정인 매출채권 규모, 상환기간 중 환가 가능한 재산 규모, 보유중인 기타 자산 등을 활용한 상환계획, 상환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용자 한도확대 심의위원회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심의를 하며, 이후 용자실행 단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 실행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